KOSHA GUIDE C - 69 - 2012

> 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작업 지침

> > 2012. 11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작성자 : 한국안전학회 박종근
- 제·개정 경과
- 2012년 10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관련규격 및 자료
- BS: safe use of cranes, mobile cranes
- ANSI: safety code for cranes, derricks, and hoists
- KOSHA GUIDE C-48-2012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
- KOSHA GUIDE C-44-2012 철골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
- 이동식크레인(구미서관, 호종관)
-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7조~제150조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~제135조
-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(고용노동부고시 제2012-70호)
- 크레인작업 표준신호지침(노동부고시 제8호)
- 이동식크레인구조·규격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(노동부고제 제32호)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11월 29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작업 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이동식 크레인에 의한 자재 인양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장비의 전도, 인양물의 낙하, 장비와 근로자의 협착, 추락, 감전 등의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이동식 크레인에 의한 인양작업을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작업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(가) "이동식 크레인"이라 함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(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)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「건설기계 관리법」을 적용 받는 기중기 또는 「자동차관리법」제3조에 따른 화물·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한다.
 - (나) "정격총하중"이라 함은 크레인 지브의 경사각 및 길이 또는 지브에 따라 훅, 슬링(인양로프 또는 인양용구)등의 달기기구의 중량을 포함하여 인양할 수 최대하중이며, "정격하중"은 최대하중에서 훅, 슬링 등의 달기기구의 중량을 제외한 것으로 실 인양 무게를 말한다.

- (다) "충격하중"이라 함은 인양작업 중 갑작스러운 하중 전이에 의해 순간적으로 충격이 슬링 등에 전달되어 부재나 장비에 과도한 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하중을 말한다.
- (라) "과부하방지장치"라 함은 정격하중 이상의 하중이 부하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상승이 정지되면서 경보음을 발생하는 장치를 말한다.
- (마) "권과방지장치"라 함은 권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양용 와이어로프가 일정한계 이상 감기게 되면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고 작동을 정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.
- (바) "훅 해지장치"라 함은 훅에서 와이어로프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말한다.
- (사) "아웃트리거"라 함은 전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의 측면에 부착하여 전도 모멘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한 장치를 말한다.
- (2)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안전보건규칙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

국내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(1) 트럭 크레인(Truck Crane)



<그림 1> 트럭 크레인(Truck Crane)

하부 주행체의 주행부에 타이어를 사용한 자주식 크레인이며, 하부 주행체 및 상부 선회체에 각각 운전석을 가지고 있다. 트럭 크레인은 <그림 1>과 같다.

(2) 크롤러 크레인(Crawler Crane)

하부 주행체의 주행부에 무한궤도 벨트를 사용한 자주식 크레인이며, 인양효율이 좋아 대규모 현장에서 많이 사용된다. 크롤러 크레인은 <그림 2>와같다.



<그림 2> 크롤러 크레인(Crawler Crane)

(3) 트럭 탑재형(Cago crane)

카고 트럭 화물적재함에 소형 크레인을 설치한 것으로서 화물의 적재, 하역, 운송이 가능한 크레인이다. 트럭 탑재형 크레인은 <그림 3>과 같다.



<그림 3> 트럭 탑재형(Cago crane)

(4) 험지형 크레인(R/T Crane: Rough Terrain Crane)

주행과 크레인 작업이 한 개의 운전실에서 수행되며, 선회반경이 매우 작아서 협소 공간 및 지형이 험한 곳의 작업에 매우 용이하다. 험지형 크레인은 <그림 4>와 같다.



<그림 4> 험지형 크레인(R/T Crane: Rough Terrain Crane)

(5) 전지형 크레인(A/T Crane: ALL Terrain Crane)

트럭 크레인의 고속주행성과 험지형 크레인의 적은 회전반경의 장점을 취합한 크레인으로서 작업성이 우수하며 모든 차축이 자유롭게 조향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. 전지형 크레인은 <그림 5>와 같다.



<그림 5> 전지형 크레인(A/T Crane: ALL Terrain Crane)

5. 이동식 크레인 안전작업 절차

절차	준수사항
5.1 작업계획 수립 및 검토	5.1.1 일반안전사항 5.1.2 이동식 크레인 선정 및 고려사항
	
5.2 장비 반입 및 설치	5.2.1 이동식 크레인 설치시 준수사항 5.2.2 작업 전 확인사항
	
5.3 작업 실시	5.3.1 작업 중 안전수칙 5.3.2 운전원 준수사항
	
5.4 작업 종료	5.4.1 작업 종료 시 안전수칙

5.1 작업계획 수립 및 검토

5.1.1 일반안전사항

- (1) 사용하는 장비의 종류 및 성능, 운행경로, 작업방법, 안전점검 사항 등을 확인하고 인양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.
- (2) 이동식 크레인은 정격하중 이상으로 작업할 경우에 전도하거나 크레인 부재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설계기준, 장비 매뉴얼과 제원표, 인양능력표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3)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 조건에 따라 정격하중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인양 능력의 표를 변경하거나 장비를 개조하여서는 안된다.

- (4) 과부하방지장치, 권과방지장치 등 방호장치에 대하여 인증기관(검정기관)의 인증 합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5) 작업장소의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최대 작용하중에 대응할 수 있는 지지력이 확보되었는지 검토하고, 지지력이 부족할 경우 지반 보강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6) 운전원 또는 근로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정격하중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.
- (7) 현장의 지반 상태를 고려하여 제한속도를 지정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
- (8) 이동식 크레인은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(수평선회를 말한다)로 운반 하는 용도이외의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.
- (9) 운전원의 자격, 검사증, 보험가입을 확인하여야 하며, 작업조건에 따라 숙련 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10) 신호수를 배치하여 크레인 작업표준 신호지침 및 KOSHA GUIDE C-48-2012 (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)의 신호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.
- (11) 작업구역 내에 출입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작업 관계자외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.
- (12) 운전원, 작업 책임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13) 승차석 이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.
- (14) 비, 눈,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철골작업 중지 또는 제383조 악천후 및 강풍시 작업 중지를 준용하여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.
- (15) 이동식 크레인 조립 및 해체 시에는 제작사의 매뉴얼 등의 작업 방법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(16) 줄걸이 용구의 안전유의 사항은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및 KOSHA GUIDE C-48-2012 (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)을 따른다.

5.1.2. 이동식 크레인 선정 및 고려사항

- (1) 이동식 크레인의 중량물 작업계획 등 작업과 관련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여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(2) 이동식 크레인은 작업 조건, 주변의 환경, 공간 확보, 제작사의 사용 기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적합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(3) 크레인 반출·입로와 장비 조립 및 설치 장소, 작업장 지지력과 작업장 주변의 장애물, 지하매설물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(4) 지브와 인양물 및 기존 구조물의 상호 간섭을 고려하여 크레인의 설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.

5.2 장비 반입 및 설치

5.2.1 이동식 크레인 설치시 준수사항

- (1) 이동식 크레인의 진입로를 확보하고, 작업 장소 지반(바닥)의 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(2) 작업장에는 장애물을 확인하고 관계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.
- (3) 충전전로의 인근에서 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의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·기계장치 작업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- (4) 아웃트리거 설치 시 지지력을 확인한 견고한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고, 미끄럼 방지나 보강이 필요한 경우 받침이나 매트 등의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.

- (5) 절토 및 성토 선단부 등 토사 붕괴에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이동식 크레인의 거치를 금지하여야 한다.
- (6) 이동식 크레인의 수평 균형을 확인하여 거치하여야 한다.
- (7) 인양물의 무게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동식 크레인의 정격하중을 준수하고, 수직으로 인양하여야 한다.
- (8) 이동식 크레인 조립 및 해체, 수리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, 견고한 지반에서 조립하여야 한다.
- (나) 크레인은 스윙이 되지 않도록 시동을 정지하고 고정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(다) 이동식 크레인의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의 작업방법과 기준을 준수하여 조립 및 해체 작업을 하여야 한다.
- (라) 지브의 상부핀은 조립 시에는 먼저 설치하고 해체 시에는 나중에 제거하는 등 핀의 설치 및 제거 순서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(마) 지브 등을 수리할 경우에는 제작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, 주 부재는 제작사의 승인 없이 용접하지 않아야 한다.
- (바) 지브 등을 수리 및 용접은 유자격자가 실시해야 하며, 용접 작업 시에는 용접 불티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 등 화재를 예방하여야 한다.
- (사) 전동기계·기구 사용 작업 시에는 접지가 되어 있는 분전반에서 누전 차단기를 통하여 전원을 인출하여야 한다.
- (아) 지브 등의 하부에 들어가서 작업할 때는 안전 블럭 등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하여야 한다.

- (자) 장비 수리 등을 위한 고소 작업 시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(차) 작업 장소에 안전 휀스,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작업 반경 내에 관계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5.2.2 작업 전 확인사항

- (1) 이동식 크레인 작업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이동식 크레인의 지브, 훅 블럭 및 도르래, 아웃트리거, 차체 등 주요부 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수리 또는 교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나) 충격하중은 이동식 크레인의 전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작업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여 충격하중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.
- (다)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한 인양작업 시 하물을 수직으로 상승 및 하강하여 이동식 크레인의 사용 기준을 벗어난 수평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라) 인양작업 시 인양 반경을 최소화하여 전도 및 낙하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 하여야 한다.
- (마) 풍속을 측정하여 확인하고,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작업을 중지 하여야 한다.
- (2) 크레인의 수평도를 확인하고, 아웃트리거를 설치할 위치의 지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
- (3) 작업 시작 전에 권과방지장치나 경보장치, 브레이크, 클러치 및 조정장치,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.
- (4) 길이가 긴 인양물을 수평에서 수직으로 세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양 반경 증가에 따른 크레인 인양 능력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KOSHA GUIDE C - 69 - 2012

- (5) 작업 장소 주변의 인양작업에 간섭될 수 있는 장애물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.
- (6) 크레인 인양작업 시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하며, 운전원과 신호수가 상호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.
- (7) 이동식 크레인의 정격하중과 인양물의 중량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(8) 이동식 크레인 작업 반경 내에 관계자 외의 출입을 통제 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9) 카고 크레인에 버켓을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작업 전에 주요 부재의 볼트 체결부 및 용접부를 점검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.
- (10) 크레인의 안전점검 사항은 KOSHA GUIDE C-48-2012 (건설기계 안전보건 작업 지침)을 따른다.

5.3 작업 실시

5.3.1 작업 중 안전수칙

- (1) 훅 해지장치를 사용하여 인양물이 훅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.
- (2) 크레인의 인양작업 시 전도 방지를 위하여 아웃트리거 설치 상태를 점검 하여야 한다.
- (3) 이동식 크레인 제작사의 사용기준에서 제시하는 지브의 각도에 따른 정격 하중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4) 인양물의 무게 중심, 주변 장애물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.
- (5) 슬링(와이어로프, 섬유벨트 등), 훅 및 해지장치, 샤클 등의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.

- (6) 권과방지장치, 과부하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를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.
- (7) 인양물의 형상, 무게, 특성에 따른 안전조치와 줄걸이 와이어로프의 매단각 도는 60° 이내로 하여야 한다.
- (8) 이동식 크레인 인양작업 시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하며, 운전원은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인양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(9) 충전전로에 인근 작업 시 붐의 길이만큼 이격하거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의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·기계장치 작업을 준수하고, 신호수를 배치하여 고압선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10) 인양물 위에 작업자가 탑승한 채로 이동을 금지하여야 한다.
- (11) 카고 크레인 적재함에 승·하강 시에는 부착된 발판을 딛고 천천히 이동하여야 한다.
- (12) 이동식 크레인의 제원에 따른 인양작업 반경과 지브의 경사각에 따른 정격하중이내에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- (13) 인양물의 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양물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(14) 긴 자재는 경사지게 인양하지 않고 수평을 유지하여 인양토록 하여야 한다.
- (15) 철골 부재를 인양할 경우는 KOSHA GUIDE C-44-2012 (철골공사 안전 보건작업 지침)을 따른다.

5.3.2 운전원 준수사항

(1)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과 하차는 승강 계단을 이용하여야 한다.

- (2)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 중 운전석 이탈을 금지하여야 한다. 운전원이 장비를 떠나야 할 경우는 인양물을 지면에 내려놓아야 하고, 구동 엔진 정지 및 브레이크를 작동 상태로 하여 작금장치를 하여야 한다.
- (3) 인양작업 중 고장 발생시 인양물을 지상에 내려놓고 브레이크와 안전장치를 작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.
- (4) 이동식 크레인의 지브와 인양물 또는 각종 장애물과 부딪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5)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크레인을 경사면에 설치한 채로 인양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.
- (나) 인양물을 측면에서 끌어당기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.
- (다) 바람의 영향 등 수평하중이 작용될 때는 작업을 금지하여 한다.
- (라) 인양물의 크기나 형상에 따라 적합한 작업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(마) 인양상태에서 지브의 급회전 및 급정지를 금지하여야 한다.
- (바) 인양작업 시 훅과 인양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사) 고정된 구조물의 제거 또는 철거 작업 등에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.

5.4 작업 종료

5.4.1 작업 종료 시 안전수칙

(1) 작업 종료 후 지반이 약한 곳 및 경사지에 주, 정차를 금지하여야 한다.

KOSHA GUIDE C - 69 - 2012

- (2) 지브의 상태를 안전한 위치에 내려 두고, 운전실의 기동장치 및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.
- (3) 크레인의 작업 종료 시에는 줄걸이 용구를 분리하여 보관하고, 훅은 최대한 감아올려야 한다.